인사위원회 규정

2016. 4. 27. 이사회 승인 제정
2017. 9. 28. 이사회 승인 개정
2018. 4. 27. 이사회 승인 개정
2020. 7. 2. 이사회 승인 개정
2023. 3. 2. 이사회 승인 개정

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인사위원회는 남원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함으로서 행정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본회 사무규정 제5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 사무규정 제2조에 따른 직원에 적용된다.

제4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3분의 1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본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되 여성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직원 중 인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 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인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회장이 지시한 사항
6. 직원 인사관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사무국장)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7. 2.>
③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 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진술권 부여) 위원회는 의안에 관계되는 피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케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9조(심의) ① 위원회의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안에 대해서는 간사가 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위원회에 재심의케 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 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 · 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 · 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제11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제정 2016.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9. 28.)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4. 27.)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7. 2.)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임기)에도 불구하고 본회 규약 부칙(개정 2019.10.23.) 제3조(경과조치) 제4항에 따른 회장 취임 이후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2023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부 칙 (개정 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